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제 301 회 임시회

- 대구광역시달서구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조례안 -

# 제 안 설 명 서



2024. 2.

이영빈 의원

- 대구광역시달서구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조례안 -

## 제 안 설 명 서

제안자: 이영빈 의원

대구광역시달서구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본 조례안은 「통일교육지원법」에 정해진 평화통일교육을 활성화하고 평화통일 역량을 강화하여 평화통일의 기반을 조성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 □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안 제1조~ 제4조는 조례의 목적, 정의, 기본원칙 및 구청장의 책무에 대해 규정하였고,
- 안 제5조~제6조는 통일교육 지원계획 수립, 공공시설의 이용 규정에 관한 사항에 대해 명시하였습니다.
- 안 제7조는 지역사회 협력망 구축에 대해 명시하였습니다.
- 안 제8조~제10조는 재정지원 등, 포상 근거, 통일교육의 반영에 대해 명시하였습니다.
- 안 제11조는 시행규칙 사항에 대해 명시하였습니다.

□ 본 조례안에 대한 사전조치 사항으로는,

-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2024년 2월 2일부터 2024년 2월 13일까지 달서구의회 홈페이지 등에 입법예고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 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 본 조례안은 평화통일교육을 활성화하고 평화통일 역량을 강화하여 평화통일의 기반을 조성하고자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통일교육 지원계획 수립 및 지원방안 등의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대구광역시달서구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조례안

【이영빈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00924005
----------	----------

발의연월일: 2024. 2. 2.

발의자: 이영빈, 권숙자, 남현주,  
이진환, 박정환, 정순옥,  
박종길, 서민우

## 1. 제안이유

- 「통일교육지원법」에 정해진 사항을 규정하여 평화통일교육을 활성화하고 평화통일 역량을 강화하여 평화통일의 기반을 조성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정의, 기본원칙, 구청장의 책무(안 제1조~제4조)
- 통일교육 지원계획 수립, 공공시설의 이용(안 제5조~제6조)
- 지역사회 협력망 구축(안 제7조)
- 재정지원 등, 포상, 통일교육의 반영(안 제8조~제10조)
- 시행규칙(안 제11조)

## 3. 제정조례안: 따로 붙임

##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붙임1
- 나. 비용추계서: 미첨부

## 대구광역시달서구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일교육 지원법」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서구 구민의 통일역량 강화 및 평화통일에 대한 인식을 제고함으로써 우리 민족의 염원인 평화통일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평화통일교육”이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과 민족공동체의식 및 건전한 안보관을 바탕으로 통일을 이룩하는 데 필요한 가치관과 태도를 기르도록 하기 위한 교육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본방향에 따라 평화통일교육(이하 “통일교육”이라 한다)을 추진한다.

1. 자유 · 민주주의 가치의 실현
2. 민족의 평화적 통일 지향
3. 통일주체로서의 자각 및 인식의 확산
4. 개인적 · 당파적 · 특정조직의 영리적 이해의 배제
5. 지역사회 평화통일 기반 구축

**제4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통일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시책을 강구하고 행정적 · 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통일교육 지원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통일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국가의 시책과 달서구의 지역적 특성에 맞는 통일교육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한다.

② 통일교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통일교육의 기본원칙
2. 통일교육의 필요성 및 활성화 방안
3. 통일교육계획의 시행에 따른 재원조달 방안
4. 지역사회 협력망 구축 방안
5. 그 밖에 통일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공공시설의 이용)** 구청장은 통일교육을 하는 자가 통일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공공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이용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지역사회 협력망 구축)** 구청장은 통일교육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지역사회 내 관련 기관, 단체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상호 유기적으로 협력하도록 노력한다.

**제8조(재정지원 등)** ① 구청장은 통일교육을 실시하는 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통일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 지원에 관한 사항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포상)** 구청장은 통일교육에 기여한 공로가 큰 개인, 단체 등에 대하여 「대구광역시달서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0조(통일교육의 반영)** 구청장은 공무원·주민 등의 교육과정에 통일교육을 반영하도록 노력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 「통일교육 지원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통일교육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통일교육”이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과 민족공동체의식 및 건전한 안보관을 바탕으로 통일을 이룩하는 데 필요한 가치관과 태도를 기르도록 하기 위한 교육을 말한다.
2. “지역통일교육센터”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통일교육을 하고, 통일교육에 관한 정보를 수집·제공하는 기능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제6조의3에 따라 통일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단체 또는 시설을 말한다.
3. “통일관”이란 북한 및 통일에 관한 자료 전시나 체험 등을 통하여 북한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국민의 통일의식을 함양하기 위하여 제6조의4에 따라 통일부장관이 지정하거나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일교육의 실시, 통일문제연구의 진흥, 통일교육에 관한 전문인력의 양성·지원, 통일교육에 관한 교재의 개발·보급, 그 밖의 방법으로 통일교육을 활성화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통일교육을 하는 자(법인 또는 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별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시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할 수 있다.

- ④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통일교육을 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상호협력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 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통일교육을 국내와 국외, 학교와 학교 밖에서 모두 장려하여야 한다.

**제6조(통일교육기본계획의 수립)** ① 통일부장관은 통일교육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통일교육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통일교육의 기본원칙·추진목표와 방향
2. 통일교육과 관련하여 각 부처 및 기관·단체의 협조에 관한 사항
3. 통일교육에 관한 국민의식 제고
4. 통일교육실태의 조사·평가 및 시정에 관한 사항
5. 통일교육에 관한 전문인력의 양성·지원에 관한 사항
6. 「초·중등교육법」 제1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교원에 대한 통일교육 관련 전문성 강화에 관한 사항
7. 통일교육 관련 교재의 개발·보급에 관한 사항
8. 국내외 통일교육 기관 및 단체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9. 통일교육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의 확충·관리에 관한 사항
10. 통일문제 및 통일교육에 관한 연구의 진흥에 관한 사항
11. 통일교육 협력체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통일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통일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통일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 통일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6조의3(지역통일교육센터의 지정 · 운영)** ① 통일부장관은 통일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통일교육을 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단체 또는 시설(이하 “기관등”이라 한다)을 지역통일교육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지역통일교육센터로 지정된 기관등의 장은 그 지정된 내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통일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③ 통일부장관은 지역통일교육센터로 지정된 기관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았을 때
2. 통일교육을 할 능력이 크게 부족하다고 인정될 때

④ 통일부장관은 지역통일교육센터로 지정된 기관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제3조에 따른 통일교육의 기본원칙을 위반하여 통일교육을 하였을 때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경비지원을 받거나 지원받은 경비를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였을 때

3.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

⑤ 통일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지역통일교육센터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⑥ 그 밖에 지역통일교육센터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의4(통일관의 지정 등)** ① 통일부장관은 국민에게 북한 및 통일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통일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통일관을 설치·운영하거나 북한 및 통일에 관한 교육·체험활동을 하는 시설을

통일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통일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시설의 장은 시설, 예산, 인력, 교육운영 계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요건을 갖추어 통일부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통일관으로 지정된 시설의 장(이하 “통일관장”이라 한다)은 제2항에 따른 지정요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 변경된 경우 통일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통일관의 지정신청 및 변경통보의 절차와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의5(통일관에 관한 시정명령)** 통일부장관은 통일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간을 정하여 통일관장에게 시정을 명할 수 있다.

1. 제3조에 따른 통일교육의 기본원칙에 위반되는 통일교육을 실시한 경우
2. 제6조의4제2항에 따른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거나 운영 의지를 명백히 상실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6조의4제3항에 따른 변경통보를 하지 아니한 경우

**제6조의6(통일관의 지정취소 등)** ① 통일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일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통일관의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6조의5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한 기간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② 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통일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6조의7(공무원 등에 대한 통일교육의 실시)**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

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 및 직원 등에게 제2조제1호에 따른 통일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통일교육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재를 개발·보급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통일교육의 방법 및 실시 시기 등 통일교육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통일교육의 반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교육훈련기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교육기관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훈련과정에 통일교육(제3조의2제1항에 따른 통일교육에 관한 기본사항을 포함한다)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 등)** ①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 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의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사무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때에 민간위탁을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 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제5조(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구청장은 제4조제1항의 각 호의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경제적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민간의 서비스공급 시장여건 등

**제6조(의회동의 및 보고)** ① 구청장은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할 때 위임사무는 미리 해당 사무를 위임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조례에서 민간위탁 사무로 정한 경우
2. 수탁기간 1년 이하의 일회성 사무
3. 청소, 방호 등 연간 반복적 사무

② 구청장이 자치사무를 재위탁 또는 재계약하는 때에는 위탁기간 90일 전까지 구의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13조제1항 각 호에 의해 재위탁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구의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